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66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곽상언 · 맹성규 · 김남국
오세희 · 이훈기 · 강준현
이해식 · 한정애 · 이정문
김현정 · 안도걸 · 이재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하천구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즉,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

을 상회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하천관리청에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홍수취약구간 조사·지정 및 관리 등

제26조의2(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하인 경우에도 범람이 우려되거나, 홍수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
2. 유수 소통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구간
3.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공사 등 하천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
4. 최근 5년 이내 홍수 피해 발생 구간
5. 하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

6. 그 밖에 홍수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구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하천 배후지(이하 “배후지”라 한다) 범위, 예상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홍수취약구간의 지정 및 해제) ① 하천관리청은 제2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의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하천의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홍수취약구간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하천

가.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나. 제26조의2제2항에서 조사된 배후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철도·댐·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홍수취약구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2. 지방하천

가. 홍수의 통제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철도·댐·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홍수취약구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③ 하천관리청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홍수취약구간 및 관련 하천시설의 현황
2. 홍수취약구간의 지정 사유, 주요 취약 요인
3. 홍수취약구간의 취약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후지 범위

④ 홍수취약구간 지정·변경 또는 해제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홍수취약구간의 관리 등) ① 관계기관등의 장은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홍수취약구간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홍수취약구간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과 관계기관등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구역의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홍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홍수취약구간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하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간에 우선하여 필요한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의2에 따른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장의2 홍수취약구간</u> <u>조사·지정 및 관리 등</u> <u>제26조의2(홍수취약구간 지정</u> <u>을 위한 조사 등) ① 하천관리청</u> <u>은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u> <u>하인 경우에도 범람이 우려되</u> <u>거나, 홍수대응이 필요하다고</u> <u>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구간</u> <u>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u> <u>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u> <u>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u> <u>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u> <u>시할 수 있다.</u> <u>1. 하천시설이 구조적으로 취약</u> <u>한 구간</u> <u>2. 유수 소통에 장애를 주는 장</u> <u>애물이 있는 구간</u> <u>3.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공사</u> <u>등 하천에서 공사가 시행되고</u> <u>있는 구간</u> <u>4. 최근 5년 이내 홍수 피해 발</u> <u>생 구간</u>

<신 설>

5. 하천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

6. 그 밖에 홍수위험요인이 존

재하는 구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하천 배
후지(이하 “배후지”라 한다) 범
위, 예상되는 인명 및 재산 피
해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조
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26조의3(홍수취약구간의 지정

및 해제) ① 하천관리청은 제
2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배후지의 인명 피
해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를 입
을 우려가 있는 하천의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홍수취약구간을 지정·변경 또
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하천

가.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나. 제26조의2제2항에서 조사된 배후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철도·댐·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홍수취약구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2. 지방하천

가. 홍수의 통제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철도·댐·저수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홍수취약구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신 설>

기관

③ 하천관리청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홍수취약구간 및 관련 하천시설의 현황

2. 홍수취약구간의 지정 사유, 주요 취약 요인

3. 홍수취약구간의 취약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후지 범위

④ 홍수취약구간 지정·변경 또는 해제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홍수취약구간의 관리 등) ① 관계기관등의 장은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홍수취약구간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홍수취약구간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과 관계기관등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구역의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홍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홍수취약구간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하천관리청은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하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간에 우선하여 필요한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생략) <u><신설></u>	1. ~ 8. (현행과 같음) 9. <u>제26조의2에 따른 홍수취약 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u>
-----------------------------------	---